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00,000,000	24,000,000
일반회계		738,667,000	22,160,010
특별회계		61,333,000	1,839,990
	공기업특별회계	47,181,000	1,415,430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20,931,000	627,930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26,250,000	787,500
	기타특별회계	14,152,000	424,56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6,420,000	192,60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76,000	26,280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748,000	22,440
	치수사업특별회계	1,447,000	43,41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480,000	134,4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181,000	5,43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857,558천원으로 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3,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2,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추경 승인 후 내시된 예산은 의회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보고토록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